

17-19세기 조세제도 변화와 토지소유 분해에 대한 연구*

김 희 호**

논문 초록

본 연구는 1590-1900년 경상과 전라도 여덟 양반가의 전답매매문서를 사용해서 계층별 토지 소유분해 현상과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는 상민층의 토지 분해를 가져온 원인으로서 이양법 보급과 소농경영 확대, 조세수탈과 고리대 등 가설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일관된 견해가 없다. 본 연구는 연구의 갭을 메우기 위해 조선 후기 상민층의 토지 분해를 가져온 주요 원인으로서 조세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8세기 후반 대동법의 확대, 균역법과 비총제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조세가 토지세화와 정액화되면서 상민층의 토지 보유세를 증가시켰다. 토지 보유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상민층은 자신의 토지를 팔고, 다른 지주의 토지를 소작하거나 도시 주변 고공으로 떠돌았다. 상민층의 토지 분해가 급증하면서 조세 재원도 감소했으며, 국가의 재정수입도 악화되었다. 본 연구는 상민층의 토지 분해를 가져온 원인으로서 제도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 주제어: 조세제도, 토지세, 토지분해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N15, N35, N95

투고 일자: 2025. 7. 21. 심사 및 수정 일자: 2025. 10. 14. 게재 확정 일자: 2025. 11. 17.

* 논문의 수정 발전을 위해 좋은 심사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나머지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e-mail: kimhh@knu.ac.kr

I. 서론

조선 후기 상민층의 토지 소유분해(이하, 토지 분해)는 이 시기 대표적 경제현상이었다. 상민층의 토지 분해는 농업생산에서 상민층의 이탈을 가져왔으며, 조선의 생산양식 변화와 생산량을 감소시켜서 국가의 경제적 위험을 증가시켰다. 또한, 상민층의 토지 분해는 주요 조세 재원이었던 상민층과 그 소유토지에 대해 부과하던 조세의 감소와 재정 악화를 불러왔다. 부족한 조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 정부와 지방관부는 다시 환곡과 민고, 기타 잡세 등을 수탈하여 상민층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조선 후기 상민층의 토지 분해는 단순한 계층별 토지 재분배 현상이라기보다는 생산양식의 변화와 조세 재정의 악화를 불러온 중요한 경제 현상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조선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에 비해 그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갭을 메우기 위해, 상민층의 토지 분해를 가져온 직접적 원인으로 조세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590-1900년 경상과 전라도에 거주하였던 여덟 양반가의 전답매매명문(田畓賣買明文) 자료를 수집하여, 계층별 지역별 토지 매매의 패널 자료로 정리하였다. 또한 계층별 패널 자료를 사용해서 상민층의 토지 분해 현상을 기록에서 직접 확인하였다. 둘째, 전답매매문서의 패널 자료를 사용해서 상민층의 토지 분해와 조세제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18세기 후반 대동법의 확대, 1750년 균역법과 1760년 비충제의 시행으로 조세의 토지세화와 정액화가 일반화되었고, 이는 상민층의 토지 보유비용을 상승시켰다. 이러한 조세제도의 변화는 경상과 전라도에서 상민층의 토지를 유의적으로 분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선 후기 토지 분해현상은 계층별로 공통적이지 않았고, 상민층의 토지는 하향 분해, 양반층의 토지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계층별 토지 소유 규모가 양극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상민층의 토지 분해를 토지의 소유규모와 경작규모로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민층의 토지 분해는 토지 소유보다는 경작 규모의 하향 분해를 나타낸다. 실제 이 시기 경상도 칠곡 광주이씨 등 양반 지주의 추수기 사례에서 작인의 경작규모는 전반적으로 영세화하였고, 장기적으로 감소했다(김건태, 2004). 상민층의 토지 경작규모는 농업 생산비용과 지대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편, 상민층의 토지 소유규모는 계층별 사회 지배력, 부의 재분배, 생산성

과 지가 변동 등과 관련되어 있다. 즉, 상민층의 토지 소유규모와 경작규모 변화는 서로 그 원인이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상민층의 토지 소유규모에 대한 분해 현상을 다루고 있다.

기존 연구는 상민층의 토지 분해를 가져온 원인으로서는 이양법의 보급과 소농경영 확대, 조세수탈과 고리대 등을 들고 있지만 일치된 의견이 없다(이영훈, 1988; 1996; 정진영, 2008). 김건태(2000; 2001; 2004)는 조선 후기 계층별 토지 소유규모의 변화를 이양법의 보급 등 경제적 요인보다는, 신분제와 관료제 등 비경제적 요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상도 칠곡 광주이씨(漆谷 廣州李氏), 경상도 용궁현(龍宮縣) 경자양안(庚子量案), 진주 금동어리(晉州 金冬於里)와 奈洞里 양안의 분석을 통해 칠곡과 용궁현에서는 전반적인 토지 소유규모의 하향 분해를, 진주에서는 토지 소유규모의 양극분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김건태는 조선 후기 대규모 토지 소유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로서 정부 관직을 들고 있고, 대규모 토지 소유 계층의 특징을 관료적 지주라고 보았다. 김용섭(1970; 1971)은 양안(量案) 분석을 통해 조선 후기 계층별 토지 소유규모의 양극화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이양법의 보급은 토지를 소수 양반지주에게 집중시키고, 대부분 상민은 토지를 상실하고 작인(作人)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¹⁾ 최윤오(2006)는 1720년 경자양안에 나타난 전라도 전주의 토지 소유 행태를 분석하면서 지주층의 토지 집중과 상민층의 토지 분해 현상을 확인하였다. 앞의 연구들은 상민층의 토지 분해를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대신, 양반 지주의 토지 소유확대 현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선 후기 조세제도의 변화로서 1708년 대동법의 확대와 1750년 균역법 시행은 개인과 가호별로 부과하던 기존 조세를 토지세로 전환하면서 상민층의 토지 보유비용을 증가시켰다. 1760년 비충제 시행은 지역별 조세액을 미리 정해서 부과하는 조세의 정액화를 가져왔으며, 상민층의 토지 보유비용을 증가시켰다. 즉, 18세기 후반 조세제도의 변화는 상민층과 그 보유 토지의 비용을 급격하게 증가시켰으며, 상민층은 토지세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토지를 팔고 다른 지주의 토지에서 소작하거나 도시 주변 고공으로 떠돌았다. 이 시기 작인의 경작면적 감소와 고공의 확대 현상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준다(김건태, 2004; 김희호·이정수, 2009; 최윤

1) 송찬식(1970), 최원규(1999) 참조.

오, 2006).

조세의 정액화는 지역별로 전년도 조세액을 기준으로 기후와 생산 조건을 고려해서 올해 조세를 미리 정해서 부과하였는데, 기관별로 감축보다 증액이 더 많았다. 조세의 정액화로 중앙정부의 세수와 재정은 경직적이었으나, 오히려 지방관부의 재정은 유동적이었다(손병규, 2011; 이철성, 1993). 지방관부는 정액세로 인해 부족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주로 상민층에게 각종 잡세를 부과하였다. 특히, 생산성의 하락과 흉년과 천재지변이 많았던 18-19세기에 생산량은 줄었는데, 정액세는 일정하여 조세를 부담하는 상민층에게 일종의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진다(이정수·김희호, 2019). 정액세의 준조세적 성격은 정액세와 생산성 하락이 결합된 결과이다.

균역법의 조세는 모든 계층에게 공평한 것이 아니라 주로 상민층과 그 보유 토지에 부과되었으며, 지방관의 재량이 더 많이 작용하여 상민층에게 불리하였다. 그에 반해 양반층은 균역과 기타 잡세의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전세와 종자비용을 소작농과 고공에게 전가하였다(이정수·김희호, 2019). 균역법뿐 아니라 지방관부가 상민층에게 부과하는 각종 잡세와 환곡, 민고 등도 토지세로 징세하면서 상민층의 토지 보유비용은 더욱 증가했다.

조선 후기 토지 결충이 일정하고 조세의 정액화가 일반화되면, 상민층의 토지 분해는 양반층의 토지 매입으로 나타나서 정부의 조세수입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정부의 조세수입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균역법과 기타 잡세의 조세 부담 계층과 대상이 주로 상민층과 그들의 보유 토지였기 때문에 조세의 토지세화는 상민층의 토지에 집중적으로 부과되었다. 따라서 상민층의 토지 분해로 상민층과 그 보유 토지에 부과되던 조세가 양반층의 조세부담으로 대체되지 못하고 그대로 조세 손실이 되었다.

18세기 후반 조세제도의 변화 이후 상민층은 토지를 팔고 농업에서 이탈하였으며, 토지세를 기반으로 한 국가 조세의 재원 감소를 가져왔다. 특히, 이 시기 조선 재정의 중심이었던 대동세를 관장하는 선혜청의 재정 악화는 심각했다(김재호, 2010). 그로 인해 부족해진 조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 정부는 불확실한 공납과 대동법에 의한 호별 조세, 균역과 부역 등 사람에게 부과하던 인두세도 모두 토지세로 전환했다. 환곡과 민고의 부담도 18세기 후반부터 급증했다. 조선 후기 조세제도의 변화는 국가 분배체제에서 중요한 정책 수단이었지만, 상민층의 토지 분해라는 생산양식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다시 국가 분배체제의 위기와 재정 악화를 가

저온 악순환적 요인이었다.

김재호(2010)와 이현창 편(2010)의 연구는 조선 후기 전세와 대동세, 환곡 등 조세는 국가 경제를 시장경제체제가 아닌 재분배경제체제를 강화하는 경제적 장치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재분배체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완성된 생산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생산자의 비용과 이익은 시장경제뿐 아니라 국가 재분배체제의 기능에서도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18세기 후반 조세제도의 변화와 토지세 증가는 생산자로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민층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상민층의 토지 분해와 생산 감소, 그리고 국가 재정의 악화를 불러왔다. 결국 18세기 후반 조세제도의 변화는 국가 재분배체제를 강화했다기보다는 생산 기반을 약화시켜서 장기적으로 국가 재분배체제의 기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조선 후기 상민층의 토지 분해를 가져온 중요한 원인으로서 제도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사 분야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²⁾ 본 논문의 II장은 경상과 전라도 여덟 양반가의 전답매매 문서를 사용해서 계층별 지역별 토지 보유규모의 변화를 살펴본다. III장은 조선 후기 조세제도의 변화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조세제도 변화와 상민층 토지 분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IV장에는 연구의 요약과 의미가 제시된다.

II. 자료

본 연구는 1590-1900년 경상과 전라도에 거주했던 8개 양반가의 전답매매문서를 장기적인 패널 자료로 정리해서 분석하였다. 경상과 전라도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농업생산 지역이며, 이 지역에 거주했던 여덟 양반가의 전답매매명문은 매매자료 수가 많고 출처를 알 수 있는 일관된 자료이다. 이 자료들은 조선 후기 전답매매규모와 토지 매매자의 신분과 소유권의 이동, 매매수단, 매매사유, 매매가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기 연속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특히 점령 문기 형태의 전답매매문서는 동일한 토지에 대한 현재 매매 내용뿐 아니라, 과거 해당 토지의 가격 변동 및 토지 매매자의 신분 변화를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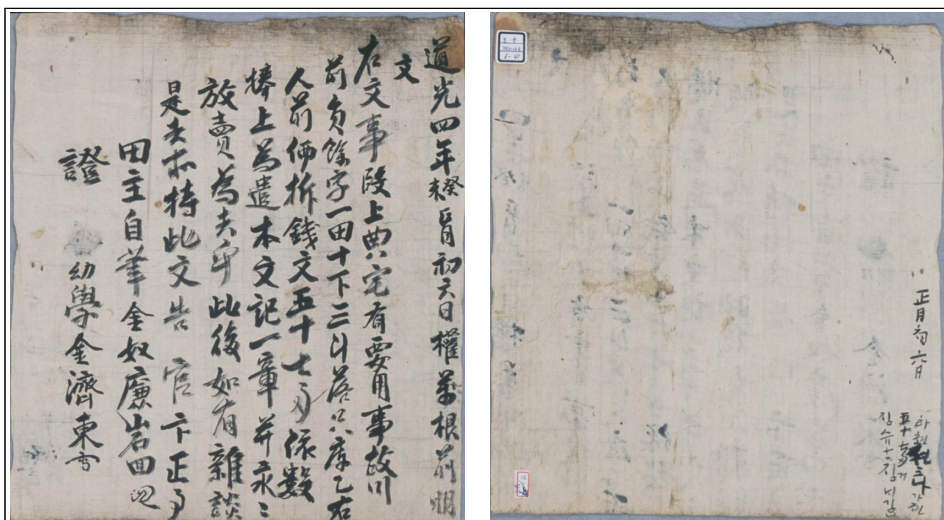
조선 후기 전답매매문서는 토지 매매에 대한 내용과 매도자(財主)와 증인, 문서

2) 근현대 조세제도의 변화와 경제발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김성태·구정모(1996) 참조.

작성자(筆執)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착명(著名)한다. 전답매매는 원칙적으로 매매문서와 함께 매매를 청원하는 문서(所志)를 매수인이 매도인의 거주지 관에 제출하고, 관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입안(立案)해 주었다. 이 과정을 거친 매매문서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여러 문서가 하나로 연결된 것을 점련문기라 한다. 그러나 토지매매를 위해 관에 신고하여 입안하던 것은 그 시기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대신 매매할 때 작성한 문서와 이전 문서를 함께 수수해서 매매관계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전답매매문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점련문기(粘連文記)의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친구 문기가 묶어진 형태의 문서이다.

전답매매문서에서 매매의 주요 사유는 자연재해, 조세 납부, 이거, 부채 등으로 구체적이었는데, 18세기 이후에는 단순하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매매한 것이 많았다. 또한 18세기 이후 전답매매문서에서 토지의 자호와 지번을 병행해서 기록한 것이 많아지는데, 이는 1634년 갑술양전과 1720년 경자양전 등 국가 차원의 양전이 이루어지면서 양전이 토지 소유권의 증빙 근거로 통용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최윤오, 2006). 다음 문서는 1824년 경상도 안동에서 광산김씨 김제동이 권만근에게 밭 3마지기를 57냥에 매도한 전답매매문서의 사례이다.

〈Figure 1〉 A 1824 land trading document of Mangeun Kwon living at Andoing, Kyungsang province



Source: Kwansan Kim family's Archiv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Jangseo-Gak.

이 매매문서의 내용은 김제동의 노가 상전택에서 갇히 쓸 곳이 있어서 천전원(川前員)에 소재한 여자(餘字) 1번 밭 11복이며, 면적이 3마지기인 곳을 권만근에게 57냥의 값을 정하여 관련 본문기 1장을 함께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이 문서는 토지의 위치, 크기, 가격, 매매 사유, 매매자, 보증인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도광 4년 계미년 1월 초 6일 권만근(權萬根)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저의) 상전택에서 갇히 쓸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전원(川前員)에 소재한 여자(餘字) 1번 밭으로 결부수가 11복이며 면적이 3마지기인 곳을 위 사람에게 전문 57냥으로 값을 정하여 정확히 받고자 하고, 관련 본문기 1장을 함께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하고자 합니다. 만일 차후에 이의가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신고하여 바름을 가릴 일입니다.

전주(田主) 자필(自筆) 김노(金奴) 염암회(廉岩回) [착명]

증인(證人) 유학(幼學) 김제동(金濟東) [착명]

배달(背頭) : 1월 초 6일 하천 점 3마지기 전문 57냥으로 결부 수는 11짐”

1590-1900년 경상도 전답매매자료는 『경북지방고문서집성』에 실려 있는 경북 월성(月城郡)의 손동만(孫東滿)씨, 영덕(盈德郡)의 이근화(李根華)씨, 예천(醴泉郡)의 권창룡(權滄龍)씨의 세 집안,³⁾ 『광산김씨오천고문서』에 실려 있는 안동(安東郡)의 김준식(金俊植)씨 집안,⁴⁾ 『古文書集成』의 의성김씨 집안⁵⁾ 전답매매명문에서 각각 발췌되었다. 경상도 전답매매문서는 손동만씨家, 이근화씨家, 권창룡씨家의 세 집안 소장 228건과 김준식씨家 소장 176건, 그리고 의성김씨家 소장 125

3) 이 전답매매명문(還退, 賭地, 相換 포함)은 16세기의 것이 172건, 17세기의 것이 57건, 18세기 이후의 것이 197건이다. 17세기 이후 전답매매 명문은 孫東滿氏家, 李根華氏家, 權滄龍氏家의 세 가문에서 소장한 것이 228건이고, 기타 26건(安東 太華洞 金俊植氏家 9, 河回洞 永慕閣 7, 權五赫氏家 2, 玉山書院 6, 醴泉郡 竹林洞 權榮基氏家 1, 嶺南大 博物館 1건)이다(『경북지방고문서집성』, 이수건 편, 1981, pp. 636-747.).

4) 이 田畚賣買明文(還退, 相換, 牌旨, 典當 포함)은 15세기의 것이 1건, 17세기의 것이 1건, 그리고 18세기 이후의 것이 175건이다(『광산김씨오천고문서(光山金氏烏川古文書)』).

5) 이 田畚賣買明文(還退, 相換, 牌旨, 典當 포함)은 18세기의 것이 30건, 19세기의 것이 95건, 그리고 20세기 이후의 것이 3건이다(『古文書集成 5~7 -義城金氏篇 正書本』).

건을 합해서 총 529건이다.⁶⁾ 전라도 전답매매문서는 『古文書集成』의 구례 문화류씨, ⁷⁾ 해남윤씨, ⁸⁾ 부안김씨⁹⁾ 등 세 집안의 전답매매문서에서 발췌되었다. 1590년 이후 전답매매명문으로서 문화류씨가 소장 524건, 해남윤씨가 소장 654건, 부안김씨 소장 103건을 모두 합해서 총 1,281건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경상과 전라도 여덟 집안 소장의 토지매매자료는 총 1,810건이다. 이정수·김희호(2011)는 경상과 전라도 전답매매문서를 사용해서 지가와 토지소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에서 19세기 양반층의 호칭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계층 간 토지매매 자료의 오류를 수정하여 보다 정밀한 상민층의 토지 보유규모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계층별 토지 보유규모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전답매매자료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하였다. 먼저, 경상과 전라도 여덟 집안의 토지 매매자료를 신분별로 구분하고, 그다음 신분별 토지 매매 건수, 토지 매매 규모, 토지 종류로 다시 구분하였다. 각 가문의 신분별 자료를 다시 지역별로 전라도는 해남윤씨, 구례 문화류씨, 부안김씨 세 집안의 자료를 모두 합해서 전라도 전답매매자료로 구분하고, 경상도는 손동만씨, 이근화씨, 권창룡씨, 김준식씨, 의성김씨 다섯 집안의 자료를 합해서 경상도 전답매매자료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상과 전라도의 신분별 전답매매자료를 전체 자료로 묶어서 전체 신분별 전답매매자료를 구했다. 이 시기 두 지역에서 토지매매가 가장 활발했던 신분층은 주로 양반과 상민층이었는데 이들의 토지 매매 건수, 토지 매매 규모, 토지 종류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중인과 문중, 족계 등을 포함하는 기타 계층의 매매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 6) 전답매매 명문을 소장한 세 집안의 소재 지역은 다음과 같다. 손동만씨家は 月城郡 江東面 良洞里, 이근화씨家は 盈德郡 蒼水面 仁良洞, 김준식씨家は 安東市 太華洞이다. 다만 光山金氏禮安派의 종가인 김준식씨家は 원래 예안파가 수백 년간 卜居하던 禮安面 烏川洞에 있었으나 안동댐 공사로 인해 宗宅은 현재의 安東市 태화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 7) 구례 문화류씨의 田畓賣買明文은 총 529건을 헤아린다. 17세기의 것이 62건이고, 18~19세기의 것이 467건, 그리고 20세기가 5건이다(『古文書集成 38 - 求禮 文化柳氏篇(II)』).
 - 8) 해남윤씨家の 田畓賣買明文은 총 661건이며, 16세기 이전의 것은 5건이고 대부분은 17세기의 것으로 500건, 18~19세기의 것이 149건, 20세기가 7건이다(『古文書集成 3 - 海南尹氏篇 正書本』).
 - 9) 부안김씨家の 田畓賣買明文은 총 103건이며, 16세기 이전의 것은 6건, 17세기 16건이며, 18~19세기의 것은 81건이다(『古文書集成 2 - 扶安 扶安金氏篇』).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답매매자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전답매매문서는 17-19세기 경상과 전라도에서만 거래된 토지매매를 기록하고 있어서, 조선 전체 전답매매자료의 대표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양반 가문에서 매도보다는 매입한 토지에 대한 문서가 잘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규모가 과장될 수 있으며, 양반가의 전답매매문서라는 점에서 양반층의 토지매매에 편향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18-19세기 매수인과 매도인의 신분이 호적과 같이 신분의 모칭이나 상향 이동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양반의 수가 늘어나서 전답매매문서는 양반층의 토지매매 위주로 편향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별 토지 소유규모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자료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전체 인구에서 양반층의 비중 증가로 인해 전체 양반층의 토지 보유규모가 증가했으나, 개별 양반의 토지 보유규모는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전답매매문서는 동일 토지에 대한 점련문기로서, 동일 토지의 매매문서라는 창문을 통해서(window view)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시기에 계층별 토지 소유권이 이동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전답매매문서는 기존에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계층의 구성과 무관하게, 동일 토지의 매매를 통해 나타난 시계열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토지 소유권 변화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계층별 토지 매매를 분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정했다. 첫째, 전답매매명문(田畚賣買明文)에서는 토지 매매단위로 결부(結負)와 두락(斗落)을 함께 표시한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결부보다는 당시 토지 면적단위로 자주 사용하는 두락을 기본 매매단위로 계산하였다.¹⁰⁾ 두락을 표시하지 않은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전답매매명문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성명과 신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양반층의 경우 17세기 이후 전답매매에서 타인을 통해 전답을 대리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 즉, ‘○○宅(戶) 奴○○’라든가 ‘上典主代奴○○’, ‘上典牌字에 따라’라는 식으로 상전을 대리하고 있다

10) 『비변사등록』 31책, 숙종 1년 9월 27일, “田用日耕 畚稱落種 乃是常例”. 조선 후기 밭은 日耕으로, 논은 落種으로 계산한다. 논은 落種은 種穀을 기준으로 하여 1升[되] 종자곡을 뿌리는 논의 넓이를 1升落, 1斗[말]의 종자곡을 뿌리는 넓이를 1斗落, 1石의 종자곡을 뿌리는 넓이를 1石落이라 하였다. 종자곡은 직파법이 아니라 이앙법을 기준하였다. 두락제(斗落制)는 이앙법의 보급과 함께 생겨난 토지면적 계산법이였다 (송찬식, 1970).

는 표현을 명문에 밝히고 있다 (李在洙, 2003). 이에 반해 명문 내에 상전을 대신한다는 문구가 없이 매수인 란에 그냥 ‘私奴○○’, ‘奴○○’로 되어 있는 경우나 매도인 란에 田·畝主 ‘사노○○’, ‘노○○’로 된 경우는 노비가 자신의 전답을 매매한 것이다.¹¹⁾ 셋째, 전답매매명문에는 대부분 매수자와 매도자의 직역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양반, 중인, 상민, 노비의 신분을 구분할 수 있다. 직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동성동명(同姓同名)의 보유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며,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¹²⁾

본 연구에서 신분계층은 양반, 중인, 상민, 노비와 문중, 계, 서원 등을 포함하는 기타 부류로 구분된다. 직역별 신분 구분은 이준구(1993)의 기준을 따랐다. 다만 호적대장의 연구에 의하면 18세기 중반 이전과 이후 유학 신분의 범위가 서로 달라진다. 18세기 중반까지 유학은 양반이었지만, 18세기 후반 상민층도 유학을 칭하고, 19세기 후반 호적에 등재된 직역자는 대부분 유학을 칭하게 되면서 양반의 수가 급증하였다(호적대장 연구팀 편, 2003; 崔承熙, 2003).

1. 양반층의 토지소유 규모변화

〈Table 1〉은 1590-1900년 경상도 월성(月城郡) 손동만(孫東滿)씨, 영덕(盈德郡) 이근화(李根華)씨, 예천(醴泉郡) 권창룡(權滄龍)씨, 안동(安東郡)의 김준식(金俊植)씨, 의성김씨 등 경상도 양반층의 논과 밭에 대한 토지매매규모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토지 순 매입은 토지의 매입에서 매도를 빼준 값이다. 〈Table 2〉는 전라도 구례 문화류씨, 해남윤씨, 부안김씨 등 세 집안을 합한 전라도 양반가의 전답매매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경상도 지역 양반층의 논 매입건수(171건)가 매도건수(132건)보다 39건 정도 더 많고, 논 매입규모(789두락)도 매도규모(600두락)보다 189두락이 많다. 이는 경상도 양반층은 논 매도 대비 매입이 더 많이

11) ‘사노○○’, ‘노○○’와 같이 표기된 경우일지라도 상전을 위한 대리매매가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양반의 대리매매가 일반화되는 18세기 중반 이후로 갈수록 노비의 토지매매는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이다.

12) 직역별 신분 구분은 다음과 같다:

忠義衛: 1750년 이전은 양반, 그 이후는 중인,

忠壯衛, 忠順衛: 1620년 이전은 양반, 그 이후는 중인,

業武, 業儒: 1696년 이전은 양반, 그 이후 중인.

증가했으며, 양반층의 논에 대한 토지 집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590-1900년 양반층은 밭에 대한 매입건수(82건)가 매도건수(67건)보다 15건 더 많고, 밭의 매입 규모(433두락)도 밭 매도(315두락)보다 118두락 더 많았다. 양반층은 밭도 논과 같이 보유규모를 늘렸으나, 논에 비해 거래 규모는 작았다.

〈Table 1〉 Land trading by the *Yangban* in Kyungsang, 1590~1900 (unit: Doolak(斗落))

contents period	The <i>Yangban</i> in Kyungsang					
	Sale of rice paddies	Sale of fields	Purchase of rice paddies	Purchase of fields	Net purchase of rice paddies	Net purchase of fields
1590-1600	0	0	0	0	0	0
1601-1650	30.5	19	36	42	5.5	23
1651-1700	50.8	9.4	54	29.2	3.2	19.8
1701-1750	113.8	14	158.36	21	44.56	7
1751-1800	128.6	137	207.9	154.2	79.3	17.2
1801-1850	95.4	74.63	125.05	94.37	29.65	19.74
1851-1900	181.5	61.6	208.05	92.4	26.55	30.8
계	600.6	315.63	789.36	433.17	188.76	117.54

sources: author's calculation from land trading documents in Kyungsang province.

〈Table 2〉 Land trading by the *Yangban* in Cheonla, 1590~1900 (unit: Doolak(斗落))

contents period	The <i>Yangban</i> in Cheonla					
	Sale of rice paddies	Sale of fields	Purchase of rice paddies	Purchase of fields	Net purchase of rice paddies	Net purchase of fields
1590-1600	0	0	8.75	0	8.75	0
1601-1650	26.2	6	227.1	0	200.9	-6
1651-1700	519.8	205.7	983.5	339.7	463.7	134
1701-1750	254.5	92.2	348.25	96	93.75	3.8
1751-1800	633.85	64.9	753.9	111.2	120.05	46.3
1801-1850	140.4	14.4	138.2	12.2	-2.2	-2.2
1851-1900	51.7	0	63.4	0	11.7	0
계	1,626.45	383.2	2,523.1	559.1	896.65	175.9

sources: author's calculation from land trading documents in Cheonla province.

전라도 지역에서 양반의 논에 대한 토지매입(2,523두락)은 매도(1,626두락)보다 897두락이나 많고 토지매매건수도 매입(492건)이 매도(327건)건수보다 더 많

다. 밭의 경우도 매입규모(559두락)가 매도(383두락)보다 더 커서 밭에 대한 집중도 논과 같이 증가하였다. 이는 경상과 전라도에서 모두 양반층의 논과 밭의 순매입이 증가하고 있어서 양반층의 토지 보유규모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상민층의 토지소유 규모변화

〈Table 3〉과 〈Table 4〉는 1590-1900년 경상과 전라도에서 상민층의 토지 매매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1590-1900년 경상도 상민층은 논 137건, 밭 63건의 매입건수(63건)보다 더 많고 논 626두락, 밭 296두락의 매입(296두락)보다 330두락이 많다. 또한 상민층의 논 매도 규모는 양반층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하나 논 매입은 양반층에 비해 37%에 불과해서, 상민층의 토지 순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Land trading by the *Sangmin* in Kyungsang, 1590~1900 (unit: Doolak(斗落))

content period	The <i>Sangmin</i> in Kyungsang					
	Sale of rice paddies	Sale of fields	Purchase of rice paddies	Purchase of fields	Net purchase of rice paddies	Net purchase of fields
1590-1600	0	0	0	0	0	0
1601-1650	54.5	27	11.5	15	-43	-12
1651-1700	54.1	6.4	53.2	7	-0.9	0.6
1701-1750	92.6	14	32.8	12	-59.8	-2
1751-1800	148	101.4	79.4	87.8	-68.6	-13.6
1801-1850	117.4	81.4	67.1	56.95	-50.3	-24.45
1851-1900	159.6	59.4	52.4	41.4	-107.2	-18
계	626.3	289.6	296.4	220.1	-329.6	-69.4

sources: author's calculation from land trading documents in Kyungsang province.

〈Table 4〉 Land trading by the *Sangmin* in Cheonla, 1590~1900 (unit: Doolak(斗落))

content period	The <i>Sangmin</i> in Cheonla					
	Sale of rice paddies	Sale of fields	Purchase of rice paddies	Purchase of fields	Net purchase of rice paddies	Net purchase of fields
1590-1600	44.7	0	17.75	0	-27	0
1601-1650	345.0	18	151.6	25	-193.45	7
1651-1700	532.0	161.9	421.6	140.5	-110.4	-21.4
1701-1750	336.8	94.95	341.75	105.35	4.9	10.4
1751-1800	329.5	80	181.75	29.2	-147.8	-50.8
1801-1850	27.4	4	28.2	6.8	0.8	2.8
1851-1900	30.3	0	15.5	0	-14.8	0
계	1,645.9	358.8	1,158.1	306.8	-487.7	-52

sources: author's calculation from land trading documents in Cheonla province.

한편, 상민층의 밭 매매에서 매도규모(289두락)가 매입(220두락)보다 커서 밭도 논과 같이 지속적으로 순 매도되었다. 하지만 밭의 순 매도 규모는 논에 비해 작아서 상민층의 토지소유는 논보다 밭의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로 변해갔다.

조선 후기 전라도 상민층은 논 매도규모(1,646두락)가 매입(1,158두락)보다 많고, 토지 매도건수(318건)도 매입건수(248건)보다 더 많았다. 이는 전라도 지역에서도 상민층의 논 순매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밭의 경우도 매도규모(358두락)가 매입(306두락)보다 커서 밭도 논과 같이 순매도가 증가했다. 다만 상민의 밭에 대한 순매도는 논에 비해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1590-1900년 동안 경상과 전라도에서 상민층은 토지 분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계층이며, 상민층의 토지 분해는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상민층의 토지 매입은 1651-1690년 정점으로 꾸준히 줄었으나, 토지 매도는 18세기 후반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민층의 토지 분해가 진행되었다. 시기별로 상민층의 토지 분해는 양반층의 토지 집중과 정반대 행태를 나타내고 있어서 양반층의 토지 집중이 상민층의 토지 분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세기 후반 상민층의 토지 분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조세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와 일치한다. 즉, 18세기 후반 조세의 토지세화와 정액화로 토지세가 급증하면서 상민층의 토지 보유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조세의 정액화로 조세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지방관부가 임의적으로 환곡과 민고, 기

타 잡세를 주로 상민층의 토지에 부과하면서 토지를 보유한 상민층의 비용이 가혹하게 증가했다. 상민층이 토지세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토지를 팔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었다.

한편, 상민층의 토지 소유규모 변화는 경상과 전라도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전라도의 경우 경상도와 달리 상민층의 토지 매도가 19세기에 거의 사라졌다. 이는 19세기에 민란이 가장 크게 확산된 지역이 전라도이며, 민란의 주요 대상이 탐욕 수령과 양반 지주였다. 따라서 전라도 양반층의 입장에서 상민층의 전답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라도 상민층의 경우 18세기 후반 지방관의 조세 수탈과 생산성 하락을 겪으면서, 대규모 토지를 이미 매도했기 때문에, 19세기 이후 토지 매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노비층의 토지소유 규모변화

1590-1900년 경상과 전라도에서 노비의 토지 매매 건수와 매매 규모, 토지 종류에 대한 내용은 <Table 5>와 <Table 6>에 나타나 있다.

<Table 5> Land trading by the *Nobi* (slaves) in Kyungsang, 1590~1900 (unit: Doolak(斗落))

content period	The <i>Nobi</i> in Kyungsang					
	Sale of rice paddies	Sale of fields	Purchase of rice paddies	Purchase of fields	Net purchase of rice paddies	Net purchase of fields
1590-1600	0	0	0	0	0	0
1601-1650	16	23	53.5	12	37.5	-11
1651-1700	18.3	25.8	17.8	3.4	-0.5	-22.4
1701-1750	12.6	10	5	6	-7.6	-4
1751-1800	20.3	23	7.8	2	-12.5	-21
1801-1850	0	7.4	0	7.41	0	0.01
1851-1900	16.89	30.9	9.9	3	-6.99	-27.9
계	84.09	120.1	94	33.81	9.91	-86.29

sources: author's calculation from land trading documents in Kyungsang province.

〈Table 6〉 Land trading by the *Nobi* (slaves) in Cheonla, 1590~1900 (unit: Doolak(斗落))

content period	The <i>Nobi</i> in Cheonla					
	Sale of rice paddies	Sale of fields	Purchase of rice paddies	Purchase of fields	Net purchase of rice paddies	Net purchase of fields
1590-1600	35	0	26.5	0	-8.5	0
1601-1650	216.85	28	234.2	29	17.35	1
1651-1700	521.3	259	201.4	135.8	-319.9	-123.2
1701-1750	40.9	16.9	13.3	5.85	-27.6	-11.05
1751-1800	6.2	3.1	45.7	5.6	39.5	2.5
1801-1850	0	0	2.4	0	2.4	0
1851-1900	0	0	0	0	0	0
계	820.25	307	523.5	176.25	-296.75	-130.75

sources: author's calculation from land trading documents in Cheonla province.

1590-1900년 경상도에서 노비의 논 매도(84두락)는 매입(94두락) 규모보다 작 으며 오히려 논외의 보유 규모가 10두락 정도 증가했다. 토지 매도건수(17건)는 매입 건수(13건)에 비해 더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토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밭의 경우 매도(120두락)가 매입(33두락) 규모보다 4배 정도 커서 노비의 밭 보유 규모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민층은 밭에 비해 논외의 순매도가 급 증한데 반해, 노비층은 반대로 논외의 순매도가 훨씬 많은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는 노비의 보유 토지가 가격이 저렴한 밭 위주로 되었기 때문이다.

1590-1900년 전라도 노비의 논 매도(820두락)는 매입(523두락)보다 크고 매도 건수(156건)도 매입 건수(84건)보다 더 많았다. 노비의 토지 매매규모는 같은 지역 상민층에 비해 절반 이하에 불과하지만 상민층과 같이 토지 순매도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밭의 경우도 매도(307두락)가 매입(176두락) 규모보다 커서 밭도 논과 같이 순 매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 여덟 집안의 토지매매에서 신분별로 토지의 집중과 분해가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지역별로 양반, 상민, 노비층의 토지 매입/매도 비율을 산출하였다. 〈Table 7〉과 〈Table 8〉은 경상과 전라도 토지 매매에서 양반, 상민, 노비층의 토지 매입/매도 비율을 보여준다. 두 지역의 토지 매매규모를 비교하면 전라도의 전체 토지 매매규모가 5,575두락으로, 경상도의 2,168두락에 비해 약 2.6배 많다. 특히 전라도의 경우 3개 집안의 매매자료인 것을 고려할 때

이들 전라도 양반가의 토지 매매규모가 경상도 다섯 집안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분별 토지 매입/매도 비율을 살펴보면, 전라도 양반층의 토지 매입/매도 비율은 1.53이었으며, 경상도 지역에서는 1.33이었다. 이는 양반층이 매도한 토지 규모를 기준으로 매입 토지 규모가 전라도에서 53%, 경상도에서 33% 더 많으며, 양반층의 토지 집중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상민층(노비)의 토지 매입/매도 비율은 전라도에서 0.53(0.62), 경상도에서 0.56(0.64)이었다. 이는 상민층(노비)의 경우 매도한 토지규모를 기준으로 매입규모는 전라도에서 53%(62%), 경상도에서 56%(64%)에 불과해서, 이들 계층의 토지가 분해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같은 기간 상민층의 보유 토지는 거의 50%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논과 밭은 가격 차이가 있어서 토지 매입/매도 비율을 계산할 때 가중치를 두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본 논문은 논과 밭의 매입과 매도 규모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Table 7〉 Ratio of land purchase to sale by the Classes in Kyungsang, 1590~1900

Status	Yangban			Sangmin			Nobi		
Type of land	rice paddies	fields	total	rice paddies	fields	total	rice paddies	fields	total
Ratio of purchase/sale of land	1.31	1.37	1.33	0.47	0.76	0.56	1.11	0.27	0.64
Purchase/sale of land (size)	789/600	433/315	1222/915	296/626	220/289	516/915	94/84	33/120	127/204

sources: author's calculation from land trading documents in Kyungsang province.

〈Table 8〉 Ratio of land purchase to sale by the Classes in Cheonla, 1590~1900

Status	Yangban			Sangmin			Nobi		
Type of land	rice paddies	fields	total	rice paddies	fields	total	rice paddies	fields	total
Ratio of purchase/sale of land	1.55	1.46	1.53	0.70	0.85	0.53	0.63	0.57	0.62
Purchase/sale of land (size)	2523/1626	559/383	3082/2009	1158/1646	306/358	1064/2004	523/820	176/307	699/1127

sources: author's calculation from land trading documents in Cheonla province.

양반층의 토지 집중은 경상도에 비해 전라도에서 조금 크게 나타났으며, 상민층의 토지 분해도 전라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두 지역 양반층의 토지 보유규모가 전체 양반층의 토지 보유규모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경상과 전라도가 대표적인 농업지역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 계층별 토지 보유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전답매매문서의 자료는 양반층의 토지 집중과 상민층의 토지 분해 등 이 시기 계층별 토지보유의 양극화 현상을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윤오(2006)는 1720년 경자양안에 나타난 전라도 전주의 계층별 토지 소유형태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양반층의 토지 집중과 상민층의 토지 분해현상을 확인하였다. 이 같이 국가 기록으로서 경자양안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사적인 전답매매문서에서 나타난 상민층의 토지 분해현상을 직접 확인해주고 있다.

Ⅲ. 실증분석

조선 후기의 사회제도는 그 이전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토지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 변화는 조세제도의 변화이다. 본 연구는 17-19세기 상민층의 토지 분해를 가져온 주요 원인으로 조세제도의 변화를 주목하였다. 여기에서는 상민층의 토지 분해와 조세제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1. 조세제도의 변화

1708년 대동법의 확대, 1750년 균역법과 1760년 비충제의 시행으로 기존 토지세였던 전세뿐 아니라, 공납과 대동미, 균역 등 모든 조세가 전결을 대상으로 부과되면서 조세의 토지세화가 진행되었다. 조세의 토지세화는 균역과 요역, 민고를 부담하던 상민층이라는 특정 계층과 그 보유 토지에 주로 부과되었다. 18세기 후반 조세의 토지세화로 토지 보유비용이 증가하면서 상민층은 자신의 토지를 팔면서, 토지 분해가 빠르게 나타났다. 상민층의 토지 이탈로 양반층이 조세를 대체해서 부담해야 하나, 균역과 기타 잡세 등 조세의 대상이 주로 상민층이어서 정부의 조세수입은 줄어 들었다. 조선 정부는 안정적인 조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조세 재원이 불확실한 공납과 대동법 등 가호별 조세와 균역과 부역 등 사람 인별 부과하던 조세도 모두 토지세로 전환했다. 또한 민고, 환곡, 특별세와 잡세와 같은 지방관의 임의적인 조세도 상민층의 토지세 부담을 가중시켰다. 1760년 비충제는 올해 조세 금액을 미리 일정하게 정해서 부과하는 조세의 정액화를 가져왔다. 18세기 후반 생산성의 하락과 흉년이 많아서 토지 수확량이 감소하였는데, 토지세는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조세의 정액화는 상민층에게 추가적인 준조세가 되었다(이정수·김희호, 2019).

조(租) 용(庸) 조(調) 제도는 조선 조세제도의 근본이었다. 조(租)는 과세 대상이 토지 전결이므로 조세 재원이 분명하고 표준화되었다. 용(庸)은 균역, 요역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며, 조(調)는 공납 등 가호를 기준으로 부과되었다. 조선 초기는 고려 말 1391년 균전법을 계승해서, 조(租), 즉 전세의 비중이 높았다. 조선 후기에는 조(調)와 용(庸), 특히, 공납, 균역과 요역의 비중이 높아져 그 조세 대상인 상민층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인두세 성격이 강했던 공납과 균역, 요역의 개혁이 시도되었다. 그 결과 1708년 대동법의 확대, 1750년 균역법과 1760년 비충제의 시행으로 조(調)의 대부분이 전결(토지)을 대상으로 바뀌었고, 용(庸)의 일부도 조세 대상이 토지 전결로 전환되었다.

전세는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이며, 1391년 권문사족의 토지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과전법을 실시하여 토지 수확량의 10% (1결당 30두)를 전세로 부과하였다. 1444년 공법(貢法)을 시행하여 토지 비옥도와 거리에 따라 1결당 4-20두씩 차등하여 전세를 거두었다. 하지만, 생산물의 변화가 토지 비옥도 때문인지, 기후조건 때

문인지 구분하지 못해서 지방관부에서는 흉년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전세를 부과했다. 1635년 영정법의 시행으로 전세를 1결당 4두(특정 지역은 6두)로 고정하였다. 영정법은 재정 운영의 편의상 고정 세율로 인하여 전세 부담을 줄이고, 부족액은 양전 결과 새로 생긴 토지에 과세하여 보충할 계획이었다.¹³⁾

공납은 지역별 특산물을 왕실에 진상하던 하는 것인데, 중앙조정에서 군과 현 단위로 그 공납 물량이 정해졌으며, 다시 군과 현은 지역 가호 당 공납 물량을 배정하였다. 매년 공물을 대신 조달하던 방납 상인의 독점적 횡포가 커지면서 상인의 폭리는 커지고, 상민층의 피해도 커졌다. 대동법은 개인과 가호에 부과하던 인두세 중심의 조세를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이었다. 1708년 대동미의 과세율은 경기·충청·전라·경상과 강원도 일부에서 논·밭을 통틀어 1결당 쌀 12두였다. 대동미의 일부는 상납미(上納米)라 하여 중앙의 선혜청에 옮기고, 일부는 유치미(留置米)라 하여 지방관청에 두고 그 지방 경비를 충당하였다. 대동법의 시행과 확대는 조세의 토지세화와 금납화를 가져왔다.¹⁴⁾

군역과 요역은 16-60세 상민층의 남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군역을 부과하였는데, 군역 대신 면포로 내는 조세가 군포이다. 군포는 원래 인당 포 2필로 정하였다. 하지만, 군포를 회피하기 위해서 상민은 스스로 조세 의무가 없는 노비를 자처하거나 양반을 모칭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조세를 부담하는 상민의 숫자도 감소하였다. 1750년 군역법 시행은 양역실층에 군역을 기록하고, 일괄적으로 군포를 1인당 2필에서 1필로 감해주었다. 하지만, 군역법에 의한 군포의 감소분은 토지를 대상으로 부가적인 결작세로 충당하였는데, 결작세는 1결당 2두씩 부과하였다. 군포도 처음에 인당 부과하던 것을 조세 대상을 토지 전결로 전환하여 1결당 2두를 부담했다. 요역은 정부의 공사와 부역을 상민층에게 부담시켰는데, 토지 8결 기준 인당 년 6일을 근무하게 하였다. 요역은 양반층과 결탁하여 면제받는 자가 많았으며, 주로 상민층이 부담했다.

1760년 비충제는 올해 토지세를 매기기 위해서 과세대상 토지의 실결(實結)을

13) 영정법은 지역별 토지 비옥도에 따라 전분을 9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경상도는 세율이 1결당 16말, 전라도·충청도는 1결당 12말, 그 밖의 5도는 1결당 4말로 부과하였다.

14) 대동법 이전에 공물에 대한 과세 규정은 현물로 수취하되, 법적인 수세 단위는 각 고을이었으며, 납부 책임자는 지방관이였다. 고을별 담세능력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공물도 고정되지 않았다. 공납은 인두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불평등을 심화시켰으며, 고을마다 수취 규정이 없어서 지방관의 임의적 과세를 막을 수 없었다.

통해 지역별 총액을 미리 확정하는 방법이다.¹⁵⁾ 하지만 실제 토지세 징수액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결정되었는데, 이는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호조에서 각 도의 작황을 참고하여 이전 해의 조세액과 비교하여 올해 지역별 감면세를 정하는 비총법(比摠法)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비총제는 전세의 정액화를 가져왔으며, 지방관은 조세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감액보다 증액하거나, 고정적인 정액세를 부과하였다(손병규, 2011; 이철성, 1993). 비총제는 이전 전세(1결당 4두)와 대동미(1결당 12두)를 모두 토지세로 정액화하였고,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금납화하였다. 조세의 정액화는 조세 규모를 미리 평가하여 조세의 효율적 징수를 가져왔으며, 이전에 지방관이 거두었던 것을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거두면서 조선 왕실의 중앙집권을 강화하였다.¹⁶⁾ 또한 국가 조세대상이 아닌 환곡 등 기관별 원액도 고정되었다(송양섭, 2008; 오일주, 1992).

결국, 조선 후기 조세는 토지에 부과하는 전세, 공납으로 부과하는 대동미, 군역으로 납부하는 군포와 결작세 등이 있다. 여기에 특별세로서 삼수미와 서량(모량)미가 있으며, 기타 부가세와 지방관이 조세하는 잡세가 있다. 18세기 후반 기본 조세 이외에 특별세와 부가세는 지역에 따라 지방관이 따로 상민층에게 부과하였다. 중요한 점은 18세기 후반 조세제도의 변화는 전통적인 조세제도인 조·용·조를 변혁하여 토지세 중심으로 전환시켰으며, 주로 상민층과 그 보유 토지에 대한 조세를 증가시켰다. 18세기 후반 토지 1결당 조세액은 삼남 지방을 기준으로 전세(4두), 대동미(12두), 군포(인당 1필), 결작(2두), 삼수미(1두 2승), 포량미(1두), 작지·역가·잡비(2두), 선가·부석가·잡비등(3두), 기타 잡비(3두)를 합하면 모두 28두 2승이었다.¹⁷⁾

15) 손병규(2003; 2008), 이철성(2003) 참조.

16) 조선 재정사 연구는 비총제의 부정적 효과로서 지방관의 수탈을 들고 있다(손병규, 2003; 2008).

17) 삼수미는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포수, 사수, 살수 등 삼수군을 훈련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조세이다. 처음 1결당 쌀 1두였으나, 1630년 이후 삼남에서 1결당 1두 2승, 황해·강원 2두 2승, 경기, 평안과 함경도는 면제되었다. 서량(모량)미는 전결에 1결당 1두 5승을 부과하였다. 별수미는 운송비로서 평안·황해도에 1결당 3두씩 과세하였다. 1721년 전세의 부가세로서 작지(作紙)는 세곡 수납을 기록할 종이 비용, 역가(役價)는 1721년 호조의 공인(貢人) 품삯을 지급하기 위한 것(1섬당 쌀 6되)이다. 잡비는 운송 중 곡식의 부패와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각 1섬에 3되씩 수납하였다. 곡식을 배나 창고에 넣을 때 인부 임금을 충당하기 위한 이가(二價)는 쌀 1섬당 7홉 5작, 선가(船價)는 운임으로 거리에 따라 달랐다.

조세로 거둔 미곡을 중앙정부로 운반하는 비용인 태가도 상민층의 부담이었는데 토지세의 10-30%였다.¹⁸⁾ 18세기 후반 실제 상민층의 총 결세는 군포를 포함해서 1결당 64-81두였다. 이 시기 1결당 생산량이 평균 240두였으니 상민층의 조세율은 28-34%로 높았다.¹⁹⁾ 이 가운데 조세의 토지세화로 인해 상민층과 그 보유 토지에 부과하는 균역, 기타 잡세와 민고 등을 합한 조세의 비중은 18.7%에 달하였다. 연암 박지원(1737~1805년)이 1799년 충청도 면천 군수로 재직할 당시 상민층의 토지 분해에 대해 언급하면서 백성 가운데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경우는 열에 한둘이고, 대부분 지주의 토지를 차경하면서 생산량의 60%를 공적, 사적 조세로 바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⁰⁾

2. 추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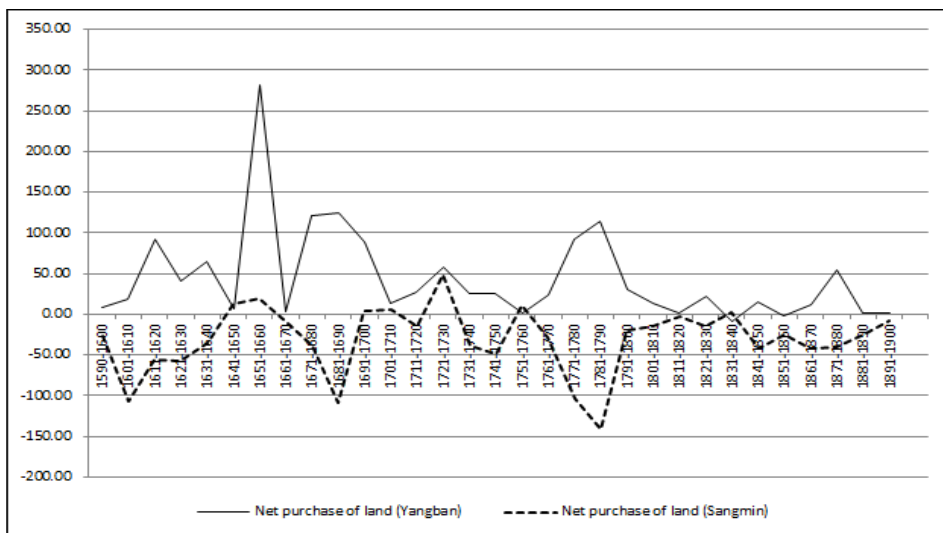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조선 후기 경상과 전라도 전답매매문서에서 18세기 후반 상민층이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2〉는 조선 후기 경상과 전라도에서 양반과 상민층의 토지(논)에 대한 순 매입규모를 보여준다. X축은 연도를, Y축은 토지 순 매입규모(두락)를 나타낸다.

18) 만기요람에서 전세와 결세는 1결당 40두, 환곡은 12-18두, 지방관이 징수하는 민고는 12-21두였다. 민고는 각종 잡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세이며, 환곡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이지만 환곡을 돌려받을 때 1결당 12-18두의 이자를 부과했다.

19) 이현창 편(2010)이 추정한 조세부담률은 이보다 낮았다. 1776년 도지지에서 결당 생산량이 벼 80석이었는데, 도정비율이 45%이므로 토지 생산량은 1결당 540두(36석)였다. 전세와 대동미는 결당 16두이며, 토지생산량의 2.5-3.3%였다. 삼수미(1.2두)와 결작(2두)을 합하면 결당 20두로서 토지생산량의 6.7% (밭의 경우 10%)이다. 지방관의 민고(15-21두)와 환곡(12-18두), 부가세와 잡세를 합하면 조세액은 1결당 64-81두였다. 논외의 총 조세부담률은 전세와 대동미(2.5-3.3%), 기타 특별세와 부가세(6.7%), 민고와 환곡(5%)을 포함하면 12.9%이다.

20) 朴趾源, 『課農小抄』〈限民名田議〉: “故農人諺云 終年動作 不勝塩價 而況見戶之中 有田自耕者 十無一二 而公賦什一 私稅分半 並計公私 則已爲十六.”

〈Figure 2〉 Net purchase of land by the *Sangmin* and *Yangban* in Korea, 1590~1900
 (unit: doolak(斗落))



sources: author's calculation from land trading documents in Kyungsang and Cheonla provi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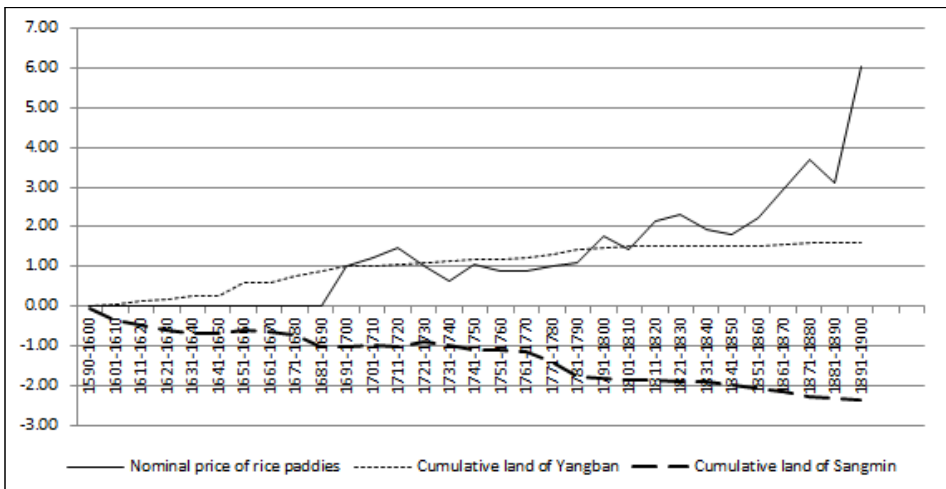
상민층의 토지 순 매입은 전 기간에 걸쳐 거의 마이너스(-)로 나타나서, 토지 매입보다 매도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본 토지의 매입/매도 비율에서도 상민층의 토지 보유규모는 그 이전에 비해 거의 50%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상민층의 토지 분해는 18세기 후반인 1760-1800년에 조세제도의 변화와 함께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19세기 상민층의 토지 분해는 주로 경상도에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 조금씩 시차를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상민층의 토지가 집중적으로 분해되는 시기가 18세기 후반 조세제도의 변화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 시기는 고공법의 변화로 고공 신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이다(김희호·이정수, 2009).

〈Figure 2〉에서 양반층의 토지 순 매입은 전 기간 거의 플러스(+)로 나타나서, 토지 매입이 매도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라도 양반층의 토지 순 매입은 1650-1700년, 1760-1800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경상도의 경우 전라도보다 양반층의 토지 매입 규모는 작고 그 시기도 주로 1760~1800년에 나타났다. 결국, 18세기 후반 조세제도의 변화 이후 두 지역 모두 양반층의 토지 집중이 나타났다.

상민층뿐 아니라, 노비도 토지를 순 매도했다. 노비층의 토지매매규모는 상민층과 비교해서 크지 않으며, 시기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상민층의 경우 1680-1700년과 1760-1800년에 토지를 많이 매도했지만, 노비층은 1680-1700년에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다. 즉, 노비층의 토지 분해는 상민층에 비해 더 빠른 시기에 진행되었으며, 전라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비제의 변화나 해남 윤씨와 같은 특정 집안에서 노비의 토지 매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희호·이정수, 2009).

〈Figure 3〉은 1700년 기준 경상과 전라도에서 계층별 누적 토지(논) 순 매입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상민층의 토지 매도는 1760-1800년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양반층의 토지 순 매입은 이와 정반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참고로 이 시기 토지 보유 규모의 변화와 지가의 추세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지속적인 지가 상승은 양반층(상민층)의 토지 순 매입(매도)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업경제에서 쌀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장기적인 미가 상승이 파생적으로 양반층의 토지 매입과 지가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Figure 3〉 Cumulative net purchase and price of land by the Yangban and Sangmin in Korea, 1590~1900 (unit: doolak(斗落)) (17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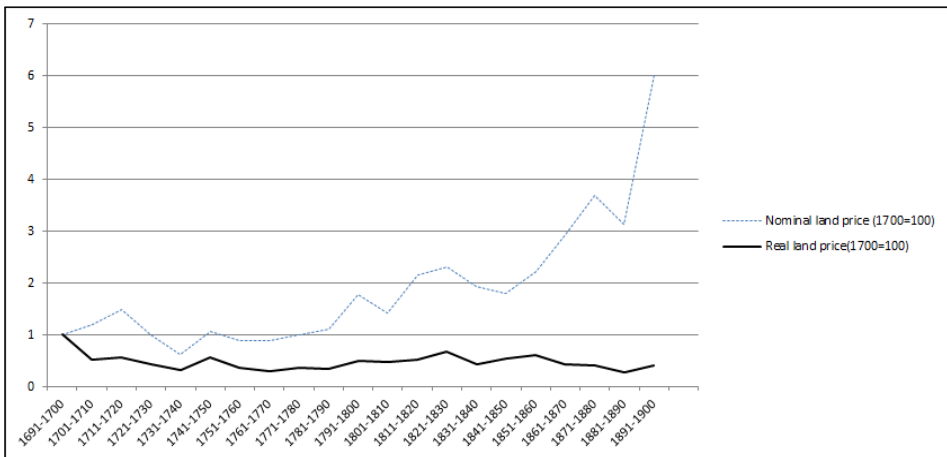


sources: author's calculation from land trading documents in Kyungsang and Cheonla provinces.

경상과 전라도 논 가격은 서로 변화 추이가 유사하여 이 시기 미곡시장이 비교적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영훈 편, 2004; 이영훈·박이택, 2004 참조). 한편, 경상과 전라도에서 논과 밭의 가격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변동성도 유사하여, 밭은 논에 대체 토지로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논에 비해 밭의 가격은 밭 가격보다 크게 변동하였다.

〈Figure 4〉는 전라와 경상 지역 논 가격과 실질 지가를 비교하였는데, 실질 지가는 논 가격을 물가로 나누어준 값이다.

〈Figure 4〉 Nominal and real prices of rice paddies, 1700~1900 (1700=1)



sources: Data on prices are obtained from Lee Y. and Park Y.(2004).

물가는 이 시기 대표적인 소비재 가격인 미곡 가격으로서 전라 영암과 경상 경주 미곡 가격의 가중평균값을 사용하였다(이영훈·박이택, 2004). 〈Figure 4〉에서 물가는 논 가격보다 빠르게 상승해서 실질 지가는 대체로 정체 또는 하락하였다. 이 같은 실질 지가의 변화는 차명수·이현창(2004)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들 논문은 18세기 실질 논 가격이 안정되었으나 19세기에 하락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 논가격의 장기추세는 이자율 변화보다는 논 생산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논 가격이 상승하는 데 반해, 실질 지가로 나타난 토지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²¹⁾

조세제도 변화와 토지 분해의 관계는 앞의 토지 매매변화를 나타내는 〈Figure 3〉에서 미리 살펴볼 수 있다. 그림에서 상민층의 토지 분해는 1760-1800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조세제도의 변화 시기와 일치한다. 법률적으로 조세제도의 변화는 1708년 대동법 확대, 1750년 균역법 시행, 1760년 비충제 시행 등 1760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 조세의 토지세와와 정액화가 일반화되었다(손병규, 2011; 이철성, 1993). 다만, 1760년 비충제 시행 이후 조세의 정액화가 곧바로 일반화되었는지 여부는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조세제도 변화와 토지 분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전답매매문서 자료와 2SLS기법을 사용해서 식(1)을 통계적으로 추정하였다. 식(1)의 종속변수는 상민층의 누적 토지 (순)매입이다. 토지 (순)매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플러스(+)이면 토지 집중을 나타낸다. 반대로 토지 (순)매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마이너스(-)인 경우 토지 분해를 나타낸다. 식(1)의 설명변수로서 조세제도 변화, 실질 지가, 양반층의 토지 집중과 미곡 가격을 사용하였다. 특히, 조세제도의 변화 이외에 상민층의 토지 분해를 가져온 요인으로서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양반층의 토지 집중과 종계와 문중계의 집단적 토지 매입 등이다.

$$SL_t = a_0 + a_1 TD_t + a_2 RLP_t + a_3 YL_t + a_4 PR_t + e_t \quad (1)$$

여기에서 SL 은 상민층의 누적 토지 (순)매입 규모, 아래첨자 t 는 시간변수이다. TD 는 조세제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더미이며, 균역법, 비충제의 시행과 대동법의 전국적인 확대가 나타나는 1760년 이후 1의 값, 그 이전에는 0의 값을 부여했다. RLP 는 실질 지가이며 논 생산성을 나타낸다. YL 은 양반층의 토지 누적 (순)매입 규모, PR 은 미곡 가격(냥/석)을 나타낸다. e 는 추정오차이며, 다른 변수와 독립적이고 백색잡음(white noise)이라고 가정한다.

식(1)을 추정하기 위한 전통적인 통계분석은 추정오차의 자기 상관성(serial correlation)과 지역별 이질적 분산(heterogeneity)으로 인해 추정결과가 편기될 수

21) 18-19세기 조선 생산성 하락에 대한 연구는 이영훈(2012), 이영훈 편(2004), 김용섭(1990a, 1990b), 김건태(2004), 허수열(2011) 참조. 기존 연구는 생산성 하락의 원인으로 인구조가와 삼림 황폐화, 수리시설의 파괴, 국가 재분배체제의 해체, 기후악화, 불안정한 재산권 보호제도, 조세제도의 문란과 소농경영방식 등을 들고 있다.

있다. 또한 설명변수인 실질 지가는 다른 경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변수의 내생성 문제(endogeneity)가 존재한다. 이러한 추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 IV)를 이용한 2 Stage Least Squares (2SLS) 추정기법을 사용하였다. 즉, 1차 단계에서 과거 시차의 실질 지가와 인구, 물가 등 도구 변수를 사용해서 실질 지가를 먼저 추정하였다. 2차 단계에서 추정한 실질 지가를 설명변수로 사용해서 식(1)을 재추정하였다. 인구(천명) 자료는 권태한·신용하(1977)의 연구에서 발췌되었으며, 추정에서 인구의 로그 값을 사용하였다.

식(1)의 2SLS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추정 회귀계수 밑에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이다. 추정 회귀계수의 위첨자(*)는 t -통계량이 5% 수준에서 유의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추정 결과에서 $R^2 = 0.9768$, $F = 201.33(0.0001)$ 이며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어서 추정 모형의 설명변수들이 상민층의 토지 (순)매입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F -통계량 옆 괄호 안의 값은 p -값이다.

$$SL_t = 1.2828^* - 0.1109^* TD_t - 0.6746 RLP_t - 1.7166^* YL_t - 0.0396^* PR_t + e_t \quad (2)$$

$$(0.2364) \quad (0.0515) \quad (0.3554) \quad (0.2834) \quad (0.0097)$$

$$R^2 = 0.9768 \quad F = 201.33(0.0001)$$

본 연구의 추정 결과에서 조세의 토지세화와 정액화 등 조세제도의 변화는 토지 보유비용과 토지세를 증가시켜서 상민층의 토지 순 매입을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a_1 < 0$). 양반층의 토지 집중도 상민층의 토지를 유의적으로 분해한 것으로 보인다($a_3 < 0$). 이 결과들은 모두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강하게 지지한다. 한편, 미곡 가격의 상승은 상민층의 생계비를 상승시켜서, 상민층이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는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a_4 < 0$). 한편, 실질 지가의 하락은 상민층의 토지 순 매입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지만($a_2 < 0$), 그 효과의 크기는 한계적이었다. 즉, 실질 지가의 효과(a_2)는 5%수준에서 유의적이지 않았으나, 10%수준에서는 유의적이었다.

한편, 실질 지가는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논 생산성을 반영하는데, 논 생산성과 상민층 토지 매입의 관계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상민층의 토지 보유 규모는 생산성보다는 조세제도 변화, 양반층의 토지 집중, 미

가 변동 등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곡 가격의 상승은 파생적으로 지가 상승을 가져오지만, 미가 상승분이 지가 상승보다 커서 비대칭적인 효과를 보인다. 이는 양반지주의 입장에서 토지 생산성이 하락하더라도 미곡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정수·김희호, 2011). 이러한 미가와 지가 변동의 비대칭성은 18세기 후반 이후 양반층의 토지 집중을 촉진하였다.

IV. 결론

이 연구는 17-19세기 상민층의 토지 분해 현상을 가져온 원인으로 조세제도의 변화, 특히 조세의 토지세화와 정액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 경상과 전라도 8개 양반가의 전답매매문서를 사용한 실증결과는 18세기 후반 조세제도 변화가 상민층의 토지 분해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시기 토지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상민층의 토지는 집중적으로 분해되었다. 조세제도의 변화 이외에 상민층의 토지 분해를 가져온 원인은 양반층의 토지 집중, 미가 상승 등이 있다. 지방관이 임의적으로 부과하는 기타 잡세와 환곡, 민고와 조세의 정액화로 나타나는 준조세도 상민층에게 큰 부담이었다. 1760년 비충제의 시행으로 조세의 정액화는 지역별로 전년도 조세액을 기준으로 가감하여 미리 정해서 부과되었는데, 지역별로 감축보다 증액이 더 많았다. 생산성 하락과 흉년과 천재지변이 많았던 18-19세기에 생산량은 줄었는데, 정액세는 일정해서 상민층은 그 세금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둘째, 지방관청은 정액세 부과와 더불어 부가적인 조세인 태가 비용, 조세의 행정 비용도 상민층에게 부과했다. 이외에 균역, 요역, 기타 잡세 등도 양반층보다는, 상민층과 그 보유 토지에 부과되었다. 전세, 균역법과 지방관이 임의적인 설치한 특별세와 전세 부가세, 잡세를 포함한 상민층의 토지세율은 생산량의 28-34%로 증가했다.

18세기 후반 이후 상민층의 토지 분해로 이들은 유랑민이 되어서 양반 지주의 토지에서 소작농이 되거나, 도시 주변 고공으로 떠돌았다. 양반층은 18세기 후반 상민층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해서 오히려 이들의 토지 보유규모는 이전보다 증가했다. 조선 후기 토지 결충이 일정하다면 조세의 정액화로 상민층의 토지 분해는

양반층의 토지 매입으로 대체되어서 정부의 조세수입은 변화가 없어야 하지만, 실제 조세수입은 줄어들었다. 이는 조세의 토지세화와 정액화가 특정 계층, 특히 상민층과 상민층의 토지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상민층의 토지 분해로 이들에게 부과되었던 조세가 양반층의 조세로 대체되지 못하고 조세 손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부족해진 조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 정부는 불확실한 공납과 대동법에 의한 호별 조세, 군역과 부역 등 사람에 부과하던 인두세도 모두 토지세로 전환했다. 환곡과 민고의 부담도 18세기 후반부터 급증했다.

조선 후기 조세제도의 변화는 국가 재분배체제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이었지만, 상민층의 토지 분해라는 생산양식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다시 국가 재분배체제의 위기와 재정 악화를 가져온 요인이었다. 본 연구의 의미는 조선 후기 상민층의 토지 분해에 대한 원인을 조세제도의 변화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사 분야에서 연구가 부족했던 제도 변화의 중요성과 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18세기 후반 조세제도 변화가 계층별 토지 양극화 현상을 초래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1. 권태환 · 신용하, “朝鮮王朝時代 人口推定에 關한 一試論,” 『東亞文化』, 제14집, 1977, pp. 289-330.
(Translated in English) Kwon, Tae-Hwan and Yong-Ha Shin, “On Population Estimates of the Yi Dynasty, 1392-1910,” *Dong-A Culture*, Vol. 14, 1977, pp. 289-330.
2. 김건태, “17-18세기 田畝소유규모의 영세화와 양반층의 대응,” 『韓國史學報』, 제9호, 2000, pp. 57-96.
(Translated in English) Kim, Kuen-Tae, “Petrification of Land Ownership and Response of the Yangban in the 17th-18th century,” *Review of Korean History*, Vol. 9, 2000, pp. 57-96.
3. 김건태, “朝鮮後期 農家の 農地所有 現況과 그 推移 -晉州地方을 중심으로-,” 『歷史學報』, 제172권, 2001, pp. 127-157.
(Translated in English) Kim, Kuen-Tae, “Changes in Land Ownership of the Rural Family in the Late Chosun Korea - A Case of Jin-Joo Area,” *Review of History*, Vol. 172, 2001, pp. 127-157.
4.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Translated in English) Kim, Kuen-Tae, *Agricultural Management of the Yangban Families in Chosun Korea*, History Critique, 2004.
5. 김성태 · 구정모, “경제발전과 조세제도,” 『경제학연구』, 제44집 제3호, 1996, pp. 79-115.
(Translated in English) Kim, Sung-Tae and Jeong-Mo Koo, “Economic Development and Tax System,” *Korean Economic Review*, Vol. 44, No. 3, 1996, pp. 79-115.
6. 김용섭,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 · II, 일조각, 1970, 1971.
(Translated in English) Kim, Yong-Sup, *Agriculture History of the Chosun Korea I, II*, Il-Jogak, 1970, 1972.
7. 김용섭, “朝鮮後期の 經營型 富農과 商業的 農業,” 『增補版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 일조각, 1990a.
(Translated in English) Kim, Yong-Sup, “Managerial and Commercial Large Scale Farming in Chosun Korea,” *Agriculture History in the late Chosun Korea, Vol I*, Il-Jogak, 1990a.
8. 김용섭, “朝鮮後期 兩班層의 農業生産 -自作經營의 事例를 중심으로-,” 『增補版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I, 일조각, 1990b.
(Translated in English) Kim, Yong-Sup, “Agricultural Production of the Yangban in the late Chosun Korea”, *Agriculture History in the late Chosun Korea, Vol II*, Il-Jogak, 1990b.
9. 김재호, “조선 후기 중앙재정의 운영: 육전조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제2장, 이현창 편, 『조선 후기 재정과 시장』,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0, pp. 41-74.
(Translated in English) Kim, Jae-Ho, “Budget Management of Central Government in the late Chosun Korea,” Chapter 2, in edited by Heon-Chang Lee, *Chosun Government Budget and Market*,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0, pp. 41-74.
10. 김희호 · 이정수, “17-18세기 雇工의 노동성격에 대한 재해석,” 『경제사학』, 제47권, 2009, pp. 3-37.
(Translated in English) Kim, Hee-Ho and Jeong-Soo Lee, “Re-Interpretation of Labor

- Characteristics of Kogong in the 17th-18th century,” *Economic History Review*, Vol. 47, 2009, pp. 3-37.
11. 손병규,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17-19세기 지방재정사 연구』, 역사비평사, 2008.
(Translated in English) Sohn, Byung-Gyu, *A Study on History of Local Fiscal Policy in the 17th-19th century Chosun Korea*, History Critique, 2008.
 12. 손병규, “조선후기 재정구조와 지방재정운영: 재정 중앙집권화의 관계,” 『조선시대사학보』, 제 25호, 2003, pp. 117-144.
(Translated in English) Sohn, Byung-Gyu, “The Budget Structure and Fiscal Management by Chosun Local Government,” *History of Chosun Period*, Vol. 25, 2003, pp. 117-144.
 13. 손병규, “조선후기 비충제(比摠制) 재정의 비교사적 검토-조선의 『부역실총(賦役實摠)』 과 명·청(明·淸)의 『부역전서(賦役全書)』,” 『역사와 현실』, 제81호, 2011, pp. 213-250.
(Translated in English) Sohn, Byung-Gyu, “A Comparative Study on the *Bichong-Jae* Budget in the late Chosun Period,” *History and Reality*, Vol. 81, 2011, pp. 213-250.
 14. 송양섭, “부역실총에 나타난 재원과약 방식과 재정정책,” 『역사와 현실』, 제70호, 2008, pp. 27-56.
(Translated in English) Song, Yang-sup, “The Method of Understanding the Government Budget and Fiscal Policies,” *History and Reality*, Vol. 70, 2008, pp. 27-56.
 15. 송찬식, “朝鮮後期 農業에 있어서의 廣作運動,” 『李海南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70.
(Translated in English) Song, Chan-Sik, “Large Scale Framing Methods in the late Chosun Korea,” *A Memorial Study for DR. Lee, Haenam*. Il-Jogak, 1970.
 16. 오일주, “조선후기 재정구조의 변동과 환곡의 부세화,” 『實學思想研究』, 제3집, 1992, pp. 59-118.
(Translated in English) Oh, Il-Joo, “Change in Tax System and Taxation of *Hwan-Gok* in the late Chosun Korea,” *Sil-Hak Thoughts Review*, Vol. 3, 1992, pp. 59-118.
 17. 李榮薰, 『朝鮮後期社會經濟史』, 한길사, 1988.
(Translated in English) Lee, Young-Hoon, *The Socio-Economic History of the Chosun Korea*, Han-kil Pub, 1988.
 18. 이영훈, “한국사에 있어서 근대로의 이행과 특질,” 『경제사학』, 제21권, 1996, pp. 75-102.
(Translated in English) Lee, Young-Hoon, “Characteristics of Modern Transition for Korean History,” *Economic History Review*, Vol. 21, 1996, pp. 75-102.
 19. 이영훈, “17세기 후반-20세기 전반 수도작 토지생산성의 장기추세,” 『경제논집』, 제51권 제2호, 2012, pp. 411-460.
(Translated in English) Lee, Young-Hoon, “Long Term Trends of Rice Paddies Productivity in the 17th-early 20th century,” *Economic Review*, Vol. 51, No. 2, 2012, pp. 411-460.
 20. 이영훈 편,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Translated in English) Lee, Young-Hoon, Edited, *The Cliometrics of Chosu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4.
 21. 이영훈·박이택, “농촌미곡시장이 전국적 시장통합: 1713-1837,” 제6장. 이영훈 편,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pp. 225-300.
(Translated in English) Lee, Young-Hoon and Yi-Taek Park, “Market Integration of

- Agricultural Rice Prices in 1713-1837,” Chapter 6, in edited by Young-Hoon Lee, *Cliometrics of the late Chosu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4, pp.225-300.
22. 이정수 · 김희호, “조선후기 소농의 확대 현상에 대한 재해석,” 『역사와 경계』, 제111호, 2019, pp.205-243.
(Translated in English) Lee, Jeong-Soo and Hee-Ho Kim, “Re-Interpretation on Enlargement of Small Farming in the late Chosun Korea,” *History and Boundary*, Vol. 111, 2019, pp.205-243.
23. 이정수 · 김희호, 『조선 후기 토지소유계층과 지가변동』, 혜안, 2011.
(Translated in English) Lee, Jeong-Soo and Hee-Ho Kim, *The Land Prices and Land Ownership in the late Chosun Korea*, Hye-An, 2011.
24. 李俊九, 『朝鮮後期身分職役變動』, 一潮閣, 1993, p.32.
(Translated in English) Lee, Jun-Ku, *Change in Status of the late Chosun Korea*, Il-Jogak, 1993, p.32.
25. 李在洙, 『朝鮮中期 田畝賣買研究』, 集文堂, 2003, p.49.
(Translated in English) Lee, Jae-Soo, *A Study on Land Trading in Chosun Korea*, Jib-Eo Dang, 2003, p.49.
26. 이현창 편, 『조선 후기 재정과 시장』,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pp.447-453.
(Translated in English) Lee, Heon-Chang, Edited, *Fiscal Budget and Market of the late Chosu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0, pp.447-453.
27. 이철성, 『17·18세기 전정 운영론과 전세제도연구』, 선인, 2003.
(Translated in English) Lee, Chul-Seong, *A Study on Tax System and Fiscal Policies in the 17th-18th century*, Seon-In, 2003.
28. 정진영, “19세기후반-20세기전반 在村 兩班地主家の 농업경영(2) - 경상도 단성 김인섭가의 병작지 경영을 중심으로 -, ” 『역사와 경계』, 제67호, 2008, pp.139-185.
(Translated in English) Jeong, Jin-Young, “Agricultural Management of the Yangban Families in the late 19th - early 20th century,” *History and Boundary*, Vol. 67, 2008, pp.139-185
29. 차명수 · 이현창, “우리나라 논가격 및 생산성, 1700-2000,” 『경제사학』, 제36권, 2004, pp.123-142.
(Translated in English) Cha, Myung-Soo and Hun-Chang Lee, “Land Price and Productivity of Korea in 1700-2000,” *Economic History Review*, Vol. 36, 2004, pp.123-142.
30. 최원규, “한말 · 일제 초기의 토지조사사업 연구와 문제점- 「朝鮮土地調査事業의 研究」 (김홍식 외, 민음사, 1997), ” 『역사와 현실』, 제31호, 1999, pp.207-230.
(Translated in English) Choi, Won-Gyu, “A Study on Land Survey and Its Problems in the late 19th-early 20th century of Korea,” *History and Reality*, Vol. 31, 1999, pp.207-230.
31. 최윤오, 『朝鮮後期 土地所有權의 발달과 地主制』, 혜안, 2006.
(Translated in English) Choi, Yoon-Oh, *Land Ownership and Land-Lord System in the late Chosun Korea*, Hye-An, 2006.
32. 최승희, 『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後期 社會身分史研究』, 지식산업사, 2003.
(Translated in English) Choi, Seung-Hee, *A Study on History of Social Status in the late Chosun period - Perspective of Old Records*, Ji-Sik San-Up, 2003.

33. 허수열,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식민지근대화론의 농업개발론을 비판한다』, 한길사, 2011.
(Translated in English) Heo, Soo-Yeol, *Chosun Agriculture under Japanese Colonization*, Han-Kil Sa, 2011.
34. 호적대장 연구팀 편,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Translated in English) Research team of House Register Records, *A Study on Register Records in Kyungsang Dan-Seong*, Institute of Dae-Dong Culture, Sung-Kyunkwan University, 2003.
35.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Translated in English) House Register Records of Kyunsang Dan-Seong, Institute of Korean Culture, 1980.
36. 『慶尙道彦陽縣戶籍大帳』, 釜山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1989.
(Translated in English) House Register Records of Kyunsang Eon-Yang, Pusan National University, 1989.
37. 『영남고문서집성』 I · II, 영남대출판부, 1992.
(Translated in English) Collectives of Yeong-Nam Old Records, Vol I, II, Yeong-Nam University, 1992.
38. 『경북지방고문서집성』, 이수건 편, 영남대출판부, 1981.
(Translated in English) Collectives of Old Records from Kyungsang province, edited by Lee Soo-Geon, Yeong-Nam University, 1981.
39. 『광산김씨 오천고문서j』,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Translated in English) Collectives of Old Records from the Kwang-san Kim's Family at Ohcheon, Institute of Korean Culture, 1980.
40. 『古文書集成 2 -扶安 扶安金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古文書集成 3 -海南尹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古文書集成 5~7 -義城金氏篇(正書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古文書集成 33, 69 -寧海 載寧李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古文書集成 37, 38 -求禮 文化柳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古文書集成 39 -海南 金海金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古文書集成 41, 42 -安東 周村 眞城李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古文書集成 47 -晉州 丹牧 晉陽河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古文書集成 50, 51 -慶州崔氏 龍山書院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古文書集成 52 -河回 豊山柳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古文書集成 57 -晉州 雲門 晉陽河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古文書集成 76 -密陽 密城朴氏 · 德南書院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Translated in English) Collectives of Old Records from the Yangban, Vol 2~76, Institute of Korean Culture, 1998.
41. 《조선왕조실록》 Chosun Dynasty Royal Record,
《비변사등록》 Bi-Byun Sa Deung-Lok,
《승정원일기》 Seung-Jeong-Won Daily Records,
《일성록》 Il-Sung Lok,
《만기요람》 Manki YoRam,
《과농소초》 Gwa-Nong So-Cho,
《증보문헌비고》 Jeung-Bo Mun-Heon Bi-Ko.

Changes in Tax System and Land Ownership in the 17-19th Century Korea*

Heeho Kim**

Abstract

Using data from the land purchasing records for the eight elite (*Yangban*) families in the 17-19th century Korea, this study explains the effects of tax system change on the intensive selling-out phenomenon by the commons.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this research provides evidence for the commons' land selling-out phenomenon, and explores the role of tax system change in causing this phenomenon in the 17-19th century. Converting various taxes into land tax resulted in higher cost of keeping land for the commons, who sold out eventually to save the costs given low land productivity. Outflows of the commons from farming land had reduced the number of people paying tax, and reduced the Korean governmental revenue fast.

Key Words: Commons, Tax, Land Tax, Selling-out Phenomenon of Land, Land Productivity
JEL Classification: N15, N35, N95

Received: July 21, 2025. Revised: Oct. 14, 2025. Accepted: Nov. 17, 2025.

* The author likes to thank two anonymous referees for their helpful comments and suggestion to revise this article better. The remaining errors are the author's own responsibility.

** Professor at School of Economics and Trad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hak Ro 80, Bukgu, Daegu, Korea (Rep of). 41566., Phone: +82-053-950-5438, e-mail: kimhh@knu.ac.kr